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보수규정

제정 2019. 9. 16.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보수"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,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.
 - 2. "연봉"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
 - 3. "연봉 외 급여"란 제 6 조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.
 - 4. "연봉월액"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 - 5. "일할계산"이란 연봉월액과 제 6 조 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 금액을 합산하여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.
 - 6. "통상임금"이란 연봉월액과 제 6 조 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.
 - 7. "평균임금"이란 계산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

'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'(이하 '샬롬하우스'라 한다)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급여

제 4 조(보수체계)

직원의 보수체계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로 한다.

제 5 조(연봉)

- ①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매월 지급하며, 그 지급액은 별표 1 과 같다.
- ② 연봉은 인사규정 제 16 조에 따라 계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별표 2 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한다.

제 6 조 (연봉 외 급여)

연봉 외 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- 1. 연장근무수당
- 2. 야간근무수당
- 3. 휴일근무수당
- 4. 기술수당
- 5. 특수업무수당
- 6. 장기근속수당
- 7. 당직수당
- 8. 직책보조비

제 7조 (보수지급)

-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.
-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보수는 직원이 지정한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률로 정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및 직원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 등은 공제할 수 있다.

제 8 조 (지급특례)

원장은 직원이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직원에게서 급여 청구가 있을 때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1.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
- 2. 혼인이나 사망한 경우
- 3.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

제 9 조 (계산 기준)

- ① 보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.
-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, 감봉, 전보, 파견, 겸임, 휴직, 정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해이, 파면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 10조 (파견직원 보수)

법인(기독교대한감리회장외교회)에서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지급한다.

제 11 조 (휴직자 및 결근자 보수)

① 휴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결근한 직원에게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외의 결근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.

제 12 조 (직위해제 된 직원 보수)

직위해제 된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징계처분 된 직원 보수)

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 보수의 100분의 5를 감액 지급한다.

제 14조 (직무대리 및 겸임 시 보수)

- ① 인사규정 제 15 조에 따라 보직관리상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 원직에 해당하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그 보직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겸임하는 경우 직무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15조 (잔무처리기간 중 보수)

휴직, 정직이나 퇴직한 직원이 사무인계나 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승인을 받아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3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보수)

인사규정 제 29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본인의 임신기간이 28 주 이상인 유산,사산휴가의 최초 60 일(다태아의 경우 75 일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 다만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8 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.

제 17조 (휴업수당)

- ① 샬롬하우스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 1 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8조 (특별성과급)

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퇴직급여

제 19조 (퇴직급여 지급대상)

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.

- 1. 퇴직
- 2. 해임 및 파면
- 3. 직권면직

제 20 조 (퇴직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액)

- ①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,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에 따른다.
- ② 제 1 항 일지라도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』 제 16 조에 의거하여 샬롬하우스는 개인퇴직연금(IRP)으로 운용하며, 연간 임금총액의 12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'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'으로 불입한다.
-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장과 직원이 협의하여 선정하며, 운용 및 투자에 대한 방법 및 결정도 마찬가지다.

제 21 조 (근속기간 계산)

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하며, 직원의 휴직, 정직, 직위해제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본다.

- 1. 「병역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
- 2.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
- 3.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 19 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

제 22 조 (퇴직급여 지급제한)

제 20 조에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의 퇴직급여는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에 따른 최저 기준 금액으로 한다.

제 23 조 (사망자 퇴직급여 지급)

사망자의 퇴직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샬롬하우스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